

(별표9-2) 등록금의 반환기준

반환사유발생일	반 환 금 액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(입학생, 재학생)	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/6 해당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 해당액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
※ 계절수업 및 대학원 집중과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따로 정함.

※ 등록금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감면된 후의 금액으로 함.